

| | | |
|---|---|---|
|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84호 2022. 11. 2.(수)</p> |  |
|---|---|---|

| | |
|--------|-------|
| 선 결 | 기관의 장 |
|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433호 거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산업단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3

거창군 공고 제2022-1473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및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4

거창군 공고 제2022-1474호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8

거창군 공고 제2022-1475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거창군 공고 제2022-1477호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6

거창군 공고 제2022-1481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거창군 공고 제2022-1482호 「거창군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51

거창군 공고 제2022-1489호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7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41 등 3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 | |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1433호

거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산업단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0-142호(2020. 12. 10.)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 문화산업단지)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거창군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주차장 A=5,86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문화관광과장)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및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및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27.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 나.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가. 제정사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폐지사유 :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 가. 목적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
 -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제12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안 제13조·제14조)
 - 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안 제15조)
 - 사.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안 제16조)
-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

4. 예고기간 : 2022. 10. 27. ~ 11. 17.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2. 11. 17.(목) 18:00까지
-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환경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환경과 환경정책담당)
 - 2) 전화 055-940-3515, 팩스 055-940-3759, 이메일 ghwjd0103@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5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1부.
3.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

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군민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교육·홍보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3. 지역환경 영향평가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5.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군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거창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환경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법에 맞게 정비하며, 조례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앞장서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7호 “건설기계임대료”, 12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용어 정의 삭제
 - 제3조(적용범위) 일부 개정 : 5천만원 이상 → 모든 관급공사
 - 제6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의무적용 조항 개정
 - 의무사용범위 확대 5천만원 → 30일 초과, 3천만원 이상
4. 예고기간 : 2022. 10. 28.(금) ~ 2022. 11. 18.(금)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42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경리담당【☎(055)940-324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입법예고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 제9호) 중 “건설기계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하도급관리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그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p> <p>2.~6. (생략)</p> <p>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p> <p>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p> <p>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u>를 말한다.</p> <p>10·11. (생략)</p> <p>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u>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u>을 말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p> <p>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p> <p>2.~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p> <p>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u>를 말한다.</p> <p>9·10. (현행 제10호·제11호와 같음)</p> <p><삭제></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u>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u>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u>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u>②</u> 군은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p> <p>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u>③</u>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p> | <p><u>제6조(하도급관리의 전자적처리)</u>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그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p> <p>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p> <p>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p> |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7. 27.>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5. 12. 29.]

□ 「전자조달이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본조신설 2020. 5. 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2020. 3. 2., 2020. 10. 7., 2021. 12. 3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거창군 재향군인회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근거 신설(제4조)

1) 법령 근거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5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0. 28. ~ 11. 17.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2) 전화 055-940-309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e18@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055-940-3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붙임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거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거창군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재향군인회원”을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 제목 “(지원대상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념하는 사업”을 “기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원”을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향군”을 “재향군인”으로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순례사업”을 “순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p> <p>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p> <p>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p> <p>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p> <p>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p> <p>3.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p> <p>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p> <p>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 사업</p> <p>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p> <p>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p> <p>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p> <p>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p> <p>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p> <p>3. 어려운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p> <p>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p> <p>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p> <p>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p> <p>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p> |

| 현행 | 개정안 |
|---|--|
| <p>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u>순례사업</u></p> <p>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p> <p>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p> <p><u>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의 지 원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방 법과 교부절차, 실적보고, 사업비 정 산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 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 <p><u>순례</u></p> <p>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p> <p>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p> <p><u><삭 제></u></p> |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2009.03.18 조례 제1917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부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사업) <삭 제>

부 칙 (제정 2009.3.18, 조례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련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6호, 2016. 5.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군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삶의 질 향상과 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안 제4조~제6조)
- 다. 통합돌봄 대상,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 라. 통합돌봄 회의, 심의 및 자문(안 제9조~제10조)
- 마.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위탁(안 제11조~제12조)

4. 예고기간 : 2022. 10. 29.(토) ~ 11. 17.(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17.(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 2) 전화 055-940-314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lovewndud@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거창군민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춰 주거, 보건·의료, 영양·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거창군 통합돌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안
3.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운용
5. 교육·홍보·연구·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3. 건강한 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4.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5. 통합돌봄 관련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이하 “통합돌봄 대상”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주민참여 교육·연구 또는 연수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통합돌봄회의) 군수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장은 통합돌봄 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

기적으로 통합돌봄회의를 개최한다.

1. 통합돌봄 대상에게 필요한 욕구의 전문적인 심사결정과 조정을 통한 고난도 사례지원
 2. 통합돌봄 자원 개발 및 사업 지원
 3. 통합돌봄 정책 과제 개발
- ② 통합돌봄회의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통합돌봄 대상 및 통합돌봄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이 경우 통합돌봄회의 참석 대상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돌봄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돌봄 심의·자문) 통합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3. 통합돌봄 사업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통합돌봄센터) 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돌봄 대상과 상담
 2. 통합돌봄 대상의 지속적 지역 거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3. 군이 정하는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참여 및 이수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

관 련 법 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

2. 제안이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2)

1) 현행: 2022년 12월 31일

2) 변경: 2027년 12월 31일

나. 용어를 순화함(안 제3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0. 31. ~ 11. 21.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미래전략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2) 전화 055-940-3362, 팩스 055-940-3679, 이메일: joyjin82@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기업지원담당 (☎055-940-3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미래전략과장”을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중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u>제2조의2(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p>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u>매 회계연도마다</u> 세출예산에 <u>계상</u>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u>미래전략과장</u> 2. 기금출납원: <u>기업지원담당주사</u> <p>③ (생략)</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u>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u>가 된다.</p> | <p><u>제2조의2(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재기재로 삭제</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p>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u>회계연도마다</u> 세출예산에 <u>반영</u>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u>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u> 2. 기금출납원: <u>기금업무 담당주사</u>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u>기금업무 담당주사</u>가 된다.</p>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수요에 부응하고 폐기물
처리 운반비용 지원에 관한 지원신청기준 마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정(제17조)
- 조례22조에 따른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창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근거 마련
 -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대상·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0. 31. ~ 11. 21.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미래전략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2) 전화 055-940-3362, 팩스 055-940-3679, 이메일: joyjin82@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기업지원담당 (☎055-940-3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것
2.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이 군에 신고된 폐기물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 <p>제17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p> <p>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것 2.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이 군에 신고된 폐기물일 것 <p>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p>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에 관한 조례」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

2. 제정이유

화장시설 설치관련 추진 시 근거 및 정당성 확보,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확립(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설치 등

나.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다. 화장시설 설치지역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라. 화장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마.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4. 예고기간 : 2022. 10. 31.(월) ~ 11. 21(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21.(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행복나눔과)

2) 전화 및 팩스 : 055)940-3124 / 055)940-3739

3) 이메일 hellomin2@korea.kr

6. 입법예고문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화장시설에는 화장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5조(부지선정)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 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화장시설 설치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행복나눔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군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 라. 그 밖에 군수가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용어 정비의 실제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 ▷개의(開議)하다

-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호선(互選)하다

- ‘호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